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47
----------	-------

발의연월일 : 2025. 10. 20.

발 의 자 : 김문수·정을호·김준혁
강경숙·박균택·김 윤
박지원·황명선·신정훈
조계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과후학교의 외부강사 선정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제외하고는 강사 선정의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지만, 방과후학교가 30년 이상 운영되면서 교육당국의 강사 검증 기준과 절차는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었음.

그런데 최근 강사 등을 통해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고 하거나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결격사유 요건을 두는 등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자격기준을 교육공무원에 준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위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1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외부강사등의 결격사유) 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과 후과정의 외부강사 및 위촉직 봉사자(이하 “외부강사등”이라 한다)가 될 수 없다.

② 외부강사등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촉된다.

③ 외부강사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치는 제3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장”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외부강사등”으로, “제31조의2”는 “제23조의4”로, “퇴직”은 “계약 해지나 해촉”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3조의4(외부강사등의 결격사유) 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과후과정의 외부강사 및 위촉직 봉사자(이하 “외부강사등”이라 한다)가 될 수 없다.</u> <u>② 외부강사등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촉된다.</u> <u>③ 외부강사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는 제3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장”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외부강사등”으로, “제31조의2”는 “제23조의4”로, “퇴직”은 “계약해지나 해촉”으로 본다.</u>